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 무역위원회, 예비조사 긍정판정 후 본조사 개시 결정 -

무역위원회에서는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정하여 본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및 고시하여,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제정 이유

1. 부과 이유 및 법적 근거

- 「관세법」 제53조에서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관세법 제53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이하생략)

- 무역위원회의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근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4개월 간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II. 부과 대상

1. 부과대상 공급국

-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

2. 부과대상 물품

- 연신가공된, 두께 25 μ m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 (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
(다만, 금속 등의 증착, 다른 필름 등과 합지된 제품은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관세품목분류번호: HSK 3920.92-0000

3.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중국	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이하 “더저우동홍”)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zhou Donghong Packing Material Co., Ltd. (이하 “창저우패킹”) - Can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이하 “창저우필름”) - Chongqing Mingzhu Plastic Co., Ltd. (이하 “충칭밍주”) - Cangzhou Mingzhu Plastic Co., Ltd. (이하 “창저우플라스틱”) 	5.18%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이하 “효성자싱”)과 그 관계사인 다음 목의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성화학주식회사 	5.08%
	그 밖의 공급자	5.12%
태국	A. J. Plast Public Co., Ltd. (이하 “에이제이피”)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4.81%
	그 밖의 공급자	
인도 네시아	PT. KOLON INA (이하 “코롱이나”)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6.71%
	그 밖의 공급자	

III. 의견 제출

1. 제출 기한

- 2022년 9월 5일

2. 기재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제출처

- 주소: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참조: 산업관세과장)
- 전화: 044-215-4432 / 팩스: 044-215-8076
- 이메일: stj21@korea.kr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기재부고시안)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붙임 2]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

[붙임 3]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 Contact



김동주 관세사
T 032-742-8250
E djkim@esein.co.kr



남근혜 컨설턴트
T 02-6011-3076
E khnam@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